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2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 한정애·이학영·이수진

민형배 · 김주영 · 박홍배

김재원 · 김영배 · 정성호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전단 중 "결정하여야"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과 절차"를 "방법·절차·통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 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
| 의 국가보상) ①·② (생 략) | 의 국가보상) ①・② (현행과 |
| | 같음) |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 | ③ |
| 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 | |
| 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 |
|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 | |
| 를 <u>결정하여야</u> 한다. <u>이 경우</u> |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
|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 |
| <u>한다.</u> <단서 신설> | <u>구인에게 통보하여야</u> |
| | <후단 삭제> 다만, 부득이한 |
| |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하기 |
| |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
| | 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 |
| | <u>다.</u> |
| <u><신 설></u>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
| |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
| | <u>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u> |
| |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
| | <u>한다.</u> |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 <u><u>5</u></u> |
| 제3항에 따른 결정의 <u>방법과</u> | <u>방법·절</u> |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u>차·통보</u>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